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 심의

검토보고

2021. 5. 26.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주환

1. 신청일 및 제출자

연번	신청일	연구단체 (과제명)	대표자
1	2021. 5. 24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조사를 통한 지역 정책개발 연구)	안향자
2	2021. 5. 24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성북구 지방의회 소관 조례 (규칙)정비 및 성북구 맞춤형 조례 발굴에 관한 연구)	정혜영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호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 2개에서 제출한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3.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 과제

- 가.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조사를 통한 지역 정책개발 연구
- 나.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성북구 지방의회 조례(규칙)정비 및 성북구 맞춤형 조례 발굴에 관한 연구

4. 참고사항

가. 관례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 예산조치 : 의원정책개발비 6,000만원 (의원수×500만원 이내)

5. 검토보고

■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요청서 요약

1)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과 제 명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조사를 통한 지역 정책개발 연구
소요예산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부가세 면제)
용역기간	3개월 (착수일로부터)
연구목적 (필요성)	전통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성북구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관련 조례와 제도, 정책 전반에 관한 여러 기준을 재검토하고 분야별 정책개발을 제안하고자 함
과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조사와 연구- 성북구 문화정책 및 관련 조례와 제도 발굴- 관내 대학교 등 지역학 연구 분석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문화정책 방향 제시- 성북구 상황에 적합한 역사문화자원 기반의 문화정책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

2) 바른 조례 연구모임

과제명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성북구 지방의회 소관 조례(규칙)정비 및 성북구 맞춤형 조례 발굴에 관한 연구
소요예산	금19,800,000원 (금일천구백팔십만원)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4개월 (착수일로부터)
연구목적 (필요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01.13.)으로 성북구의회 소관 조례와 규칙 등의 제·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제정하는 성북구 맞춤형 조례 입안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과업 주요내용	- 성북구의회 소관 조례(규칙) 실태 조사 및 분석 - 서울시의회 및 타 지자체(의회) 조례 비교 분석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소관 조례(규칙) 일제 정비 - 성북구 맞춤형 신규 조례 발굴
기대효과	- 조례(규칙) 일제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조례 입안을 통한 의원 전문성 함양

■ 검토의견

- 2021년 5월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2개의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였음.
- 2013년 11월 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요청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 심의내용은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주제의 조정과 승인,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액 한도 내 책정과 배분, 그 밖에 의원정책개발비 집행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임.
- 기 접수된 2개의 ‘의원정책연구용역비 승인 요청서’를 검토한 바 연구단체의 지방의회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주제, 예산액,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에 따르면 ‘**의원정책개발비의 경비성격**은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이며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편성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하며,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지방의원수 × 500만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2개의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정책연구 용역비 소요예산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2개의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요청서를 검토 한 결과, 정책 전반에 관한 여러 기준 재검토와 성북구 맞춤형 조례 입안을 통한 의원 역량강화와 전문성 함양, 분야별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연구용역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 됨.